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김영미 의원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21-41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1. 4 . .

발 의 자 : 김영미, 김성희, 김진천,
이필레, 이홍민, 한일용

1. 제안이유

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, 신규 채용 위축 등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청년 대상 활동비 지급 근거 조항 신설(안 제12조 제3항 및 제4항)

3. 관계법령

가.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나.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4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21. 4. 9. ~ 2021. 4. 14.

나. 붙임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·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

1.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·캠페인·프로그램 운영,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
2.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·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·시행
3.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2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| <p>제12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·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·캠페인·프로그램 운영,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</u> <u>2.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·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·시행</u> <u>3.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</u> |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청년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,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, 직업 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기업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“기업등”이라 한다)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(이하 “대학등”이라 한다)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,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예산의 범위 내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

[관련 조문]

제12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·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한시적, 일회성 지원

-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-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
 -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: 1인당 50만원(서울거주 만19~34세, 졸업 2년 이내 청년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| 연도 |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합계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
| 구분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계(a)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세출 | 구비 | 3,733,150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계(b) | 3,733,150 | - | - | - | - | - |
| □ 총 비용(a-b) | | 3,733,150 | - | - | - | - | - |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| 연도 |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합계 |
|----|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
| 구분 | 구비 | 3,733,150 | - | - | - | - | - |
| | 합계 | 3,733,150 | - | - | - | - | - |

5. 덧붙이는 의견

- 비용추계 내역은 추후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전보아 |
| 연락처 | 02-3153-8982 |